

● 상공회의소법 주요 내용

제 10 조(회원) ①상공업(「소득세법」 제 19 조 제 1 항 제 2 호부터 제 14 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소득을 얻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)을 영위하는 자(이하 “상공업자”라 한다)는 그 영업소, 공장 또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상공회의소의 회원이 될 수 있다.

②상공업과 관련된 업무를 하는 비영리법인 및 단체는 그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상공회의소의 특별회원이 될 수 있다.

③제 1 항에도 불구하고 「부가가치세법」 제 17 조에 따른 매출세액(「부가가치세법」 제 11 조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거나 같은 법 제 12 조에 따라 면세되는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출한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매출세액에 합산한다)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에 해당하는 상공업자는 당연히 회원이 된다.

※ 상공회의소법 시행령 제 11 조(당연회원의 기준)

제 10 조제 3 항에 따라 당연회원이 되는 매출세액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특별시에 소재하는 상공업자 : 17 억원
2. 광역시에 소재하는 상공업자 : 5 억원
3. 특별자치도·시·군(광역시의 군은 제외한다)에 소재하는 상공업자 : 2 억 5 천만원

제 13 조(회원 등의 권리) ①회원 및 특별회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공회의소가 하는 사업에 참여하고 상공회의소가 운영하는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.

②회원 및 특별회원은 제 22 조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원 및 특별의원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진다.

제 14 조(회원 등의 의무) ①회원과 특별회원은 상공회의소의 운영 및 사업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한다.

②회원과 특별회원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승인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비를 내야 한다.

③상공회의소는 「중소기업협동조합법」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에 가입한 회원이 제 10 조제 3 항의 회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비의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.

※ 여수상공회의소 회비규정 제 4 조(회비)

② 당연가입회원의 회비는 그 회원의 부가가치세법 제 17 조의 규정에 의한 매출세액(부가가치세법 제 11 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거나 동법 제 12 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되는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시행령 제 10 조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매출 세액에 합산한다. 이하 같다)에 1,000 분의 3.0 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.

제 17 조(회원 대장) ①상공회의소는 회원 및 준회원에 대한 회원 대장(臺帳)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고 관리하여야 한다.

②상공회의소는 회원 대장을 작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회원과 준회원에게 매출액과 제품 등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회원과 준회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요청을 거부하지 못한다. 다만, 회원과 준회원의 특허·기술이나 그 밖의 영업의 비밀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③누구든지 회원 대장의 작성과 관련하여 상공업자의 비밀에 관한 사항을 알게 된 경우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도용(盜用)하여서는 아니 된다.